

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(갑)

(년 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	처리기간	즉시
--	------	----

1. 신고자 인적사항

① 성명(법인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업태	④ 종목

2. 재활용폐자원 매입 합계

구분	매입처 수	건수	취득금액	매입세액 공제액
⑤ 합계				
⑥ 영수증 수취분				
⑦ 계산서 수취분				

3.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

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

당기 과세표준(매출액)			당기 매입액			대상액 한도계산		
⑧ 합계	⑨ 예정분	⑩ 확정분	⑪ 합계	⑫ 세금계산서	⑬ 영수증 등	⑭ 한도율	⑮ 한도액	⑯ 공제가능한 금액 (=⑮-⑫)

나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

⑰ 공제대상금액 (=⑬과 ⑯의 금액 중 적은 금액)	공제대상세액		이미 공제받은 세액			⑳ 공제 (납부)할 세액 (=⑰-㉑)
	⑱ 공제율	㉒ 공제대상 세액	㉓ 합계	㉔ 예정 신고분	㉕ 월별 조기분	

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(합계금액으로 기재)

일련 번호	㉔ 공급자		㉕ 건수	㉖ 품명	㉗ 수량	㉘ 취득금액
	성명 또는 상호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
합계						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.

신고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* 구비서류: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*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(2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이 신고서는 '26.7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2. "⑤ 합계"란: "⑥ 영수증 수취분"란과 "⑦ 계산서 수취분"란의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.
3. "⑥ 영수증 수취분"란: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, "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4. "⑦ 계산서 수취분"란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,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5. "매입세액 공제액"란: 취득금액의 3/103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(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)
6. "3.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"란("⑧합계"란부터 "㉓공제(납부)할 세액"란까지)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.
7. "⑧ 합계"란: 당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(매출액) 합계액을 적습니다.
8. "⑨ 예정분"란: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9. "㉒ 세금계산서"란: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합계액(부가가치세 제외금액)을 적습니다.
10. "㉓ 영수증 등"란: "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"란과 "⑦ 계산서 수취분"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1. "㉔ 한도율"란: 100분의 80(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)을 적습니다.
12. "㉕ 한도액"란: 당기 과세표준(매출액) 합계(⑧)에 한도율(㉔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3. "㉖ 공제가능한 금액"란: "㉕ 한도액"란에서 "㉒ 세금계산서"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, 음수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14. "㉗ 공제대상세액"란: "㉗ 공제대상금액"란에 "㉘ 공제율"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5. "㉘ 합계"란: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6. "㉙ 공제(납부)할 세액"란: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) 6쪽 중 제4쪽 (47)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(△)로 적습니다.
17. "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"란("㉚ 공급자"란부터 "㉞ 취득금액"란까지):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으며,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(2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
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(을)
(년 기)

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-	--

일련 번호	공급자		건수	품명	수량	취득금액
	성명 또는 상호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16						
17						
18						
19						
20						
21						
22						
23						
24						
25						

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(갑)

(년 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	처리기간	즉시
--	------	----

1. 신고자 인적사항

① 성명(법인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업태	④ 종목

2. 중고자동차 매입 합계

구분	매입처 수	건수	취득금액	매입세액 공제액
⑤ 합계				
⑥ 영수증 수취분				
⑦ 계산서 수취분				

3.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

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

당기 과세표준(매출액)			당기 매입액			대상액 한도계산		
⑧ 합계	⑨ 예정분	⑩ 확정분	⑪ 합계	⑫ 세금 계산서	⑬ 영수증 등	⑭ 공제가능한 금액 (=⑧-⑫)	⑮ 공제율	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

나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등

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			이월세액			⑳ 영수증 등 매입세액 (=⑬×10/110)		㉑ 공제대상세액 Min(⑯, ⑲+㉑)	
	⑰ 직전전기	⑱ 직전기	⑲ 합계 (⑰+⑱)						
이미 공제받은 세액			㉒ 공제 (납부)할 세액 (=㉑-㉒)			공제 후 잔액			㉓ 차기이월세액 (㉒+㉓)
㉒ 합계	㉒ 예정 신고분	㉒ 월별 조기분	㉒ 직전전기 (소멸)	㉒ 직전기	㉒ 당기	㉒ 합계 (㉒+㉒-⑯)			

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(거래건별로 기재)

일련 번호	㉔ 공급자		㉕ 건수	㉕ 품명	㉕ 수량	㉕ 자동차등록 번호	㉕ 차대번호	㉕ 취득금액
	성명 또는 상호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		
	합계					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0조제5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세무서장

귀하

첨부서류	* 구비서류: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*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(2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이 신고서는 '26.7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2. "⑤ 합계"란: "⑥ 영수증 수취분"란과 "⑦ 계산서 수취분"란의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.
3. "⑥ 영수증 수취분"란: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, "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4. "⑦ 계산서 수취분"란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,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5. "매입세액 공제액"란: 취득금액의 10/11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중고자동차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 - 가.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
 - 나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(다른 그 밖의 관계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)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. 다만,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.
7. "3.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"란("⑧ 합계"란부터 "⑩ 차기이월세액"란까지)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.
8. "⑧ 합계"란: 당기 과세기간의 중고자동차 과세표준(매출액)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"⑨ 예정분"란: 월별 조기환급, 예정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10. "⑫ 세금계산서"란: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고자동차 매입액 합계액(부가가치세 제외 금액) 합계액을 적습니다.
11. "⑬ 영수증 등"란: "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"란과 "⑦ 계산서 수취분"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2. "⑭ 공제가능한 금액"란: "⑧당기 과세표준(매출액) 합계"란에서 "⑫세금계산서"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, 음수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13. "⑮ 공제율"란: 110분의 10을 적습니다.
14. "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"란: "⑭ 공제가능한 금액"란에 "⑮ 공제율"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5. "이월세액"란("⑰ 직전전기"란부터 "⑲ 합계"란까지):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"⑰ 직전전기"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"⑰ 직전기"란의 금액을 적고, "⑱ 직전기"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"⑳ 당기"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"⑲ 합계"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"㉑ 차기이월세액"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 다만,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적습니다.
16. "㉒ 영수증 등 매입세액"란: "⑬ 영수증 등 매입액"란에 "⑮ 공제율"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7. "㉓ 공제대상세액"란: "⑲ 이월세액 합계"란과 "㉒ 영수증 등 매입세액"란을 합한 금액과 "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"란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18. "㉔ 합계"란: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9. "㉕ 공제(납부)할 세액"란: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 서식) 6쪽 중 제4쪽 (47)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(△)로 적습니다.
20. "공제 후 잔액"란("㉖ 직전전기"란부터 "㉘ 합계"란까지): 먼저 "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"에서 "⑰ 직전전기 이월세액" + "⑱ 직전기 이월세액" + "㉒ 영수증 등 매입세액"을 순서대로 공제하고, "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"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공제 후 잔액을 각각 적습니다.(공제 순서: ⑰직전전기 > ⑱직전기 > ㉒영수증 등 매입세액)
21. "㉘ 합계"란: "⑲ 이월세액 합계"란과 "㉒ 영수증 등 매입세액"란을 합한 금액에서 "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"을 차감한 금액(음수인 경우 "0")과 일치해야 합니다.
22. "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"란("㉙ 공급자"란부터 "㉛ 취득금액"란까지):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건별로 적으며,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(4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
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(을)
(년 기)

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-	--

일련 번호	공급자		건수	품명	수량	자동차 등록번호	차대번호	취득금액
	성명 또는 상호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11								
12								
13								
14								
15								
16								
17								
18								
19								
20								
21								
22								
23								
24								
25								